



2022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시보기

첫번째 이야기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여고생 요구로 성관계 가졌는데 강간 고소... 이것 없었으면 징역형"

어느 기사의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A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던 B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후 B의 집에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는 그 중 1회 강간, 1회 강간 미수를 고소했습니다.
이 때 경찰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혐의없음, 불송치!
A대상 무고혐의 수사 개시!

"여고생 요구로 성관계 가졌는데 강간 고소... 이것 없었으면 징역형"

2022 타티내의 이슈리포트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학생이 B의 집에 간 적이 있군~
서로 반말? 친구 같은 사이 아니야?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고,
폭행이나 협박 없으니 강간아니네!



경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는 교육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학생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Q1. 학생과 교사(또는 교직원)의 성관계,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으신가요?

Q2. 학생이 교사(또는 교직원)에게 고민상담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단둘이 만나도 될까요?

Q3. 친밀한 관계에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100% 동의한 성관계일까요?
어제의 동의가 오늘의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전할까요?

교사나 교직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22 타티나이 이슈리포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2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FHS(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

교사, 코치들은 학생선수와의 지나친 사적대화, 학교밖에서 1대1만남, 데이트 등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56조, 제18조

성폭력범죄자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성범죄는 가중처벌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전할까요?

그런데
계약기간의 공백,
법의 공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일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해외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1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1학년(만17세)학생과 18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진 37세 교사가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학교측은 경찰에 알림과 동시에 그를 해고했습니다.

해외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2 타티나이의 이슈리포트



같은 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기소되었고, 해당 교사 또한 학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언론은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문제로 지적하며 해당 교사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외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해당 교사들은 동의·비동의를 떠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되었고
학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재판부의 판결 전에 **학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교사로서 부적절하다’** 였습니다.

교사나 교직원이 아동·청소년에게
성관계 요구하면 **안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고민상담을 한다면
사적인 관계 만들지 말고

+ 학교, 경찰, 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